

이른 우리서울 함께누릴 밝은미래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77-9151-2 / 전송 774-6763

문서번호 주차 30310-1383

시행일자 92. 12. 30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 453²⁻

취급		시	장
보존		1/100	
교통국장	전결		
주차계획담당관	[인]	법무담당관	
교통시설계장	[인]	고시실시	1992.12.28 제 47 호
기안	이익구	관망지	김세계장
		[인]	[인]

제목 도시계획사업(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)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고시

1. 지교 30400-3994('92.12.28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시고시 제473호(83.9.13)로 도시계획사업(시외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) 시행허가된 상봉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자동차터미널법 제7조, 제31조 및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의거 아래외감이 변경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.

가. 도시계획사업 변경내역(사업기간)

- 변경전 : 92. 12. 31

- 변경후 : 93. 12. 31

첨부 : 도시계획사업변경 고시문 사본 1 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: 중랑구청장

참조 : 지역교통과장

제목 : 도시계획사업(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)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홍보

1. 서울시고시 제473호(83.9.13)로 도시계획사업 (시외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) 시행허가된 상봉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시외버스터미널)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였기 홍보하니 관련업무 추진에 착오없기 바람.

첨부 : 고시문 사본 1부.

끝.

서울특별시 장

135

(제 3 안)

수신 : 홍보계획담당관

제목 : 시보계재 의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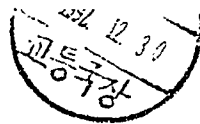
1.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계획사업(시외버스
여객자동차터미널)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시보계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
시기 바랍니다.

가. 계재구분 : 고시

나. 계 재 명 : 도시계획사업(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)실시계획변경인가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

첨부 : 고시문 사본 2 부. 끝



주 차 계 획 담 당 관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2-453 호



고 시 " 안 "

○ 도시계획사업(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)실시계획 변경인가

1. 서울시고시 제473호(83.9.13)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시외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) 실시 계획 인가된 상봉시외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주차계획담당관과 중랑구 지역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

1992. 12.



서울특별시 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변경없음.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변경없음.
- 다. 면적 또는 규모 : 변경없음
- 라. 사업시행지의 상경 및 주소 :
 - 중랑구 상봉동 83 -1 (주)신아주, 대표이사 문재영
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- 착수예정일 : 변경없음
 - 준공예정일 [당초 : '92. 12. 31
 변경 : '93. 12. 31
- 바. 수용 및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: 변경없음
- 사. 관계도서 : 생략
- 아. 기타사항 : 변경없음

